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892호 2012. 5. 8.(화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2년 5월 8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87호

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”을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)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6조(셔틀버스 운행)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·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.

1.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
2. 정차시간 정차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
3. 차량 내·외부 청결 유지
4. 단정한 복장 착용
5.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
6. 회원과의 분쟁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
7.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 금지
8. 승·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